

한국지방세연구원 2019년 출연금 동의를 건

의안 번호	1479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18. 10. 5.

제출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제안이유

2019년도 울산광역시 중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: 5,563천원

1)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및 세제 개편,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의 우리구 출연금 지급

2) 산출기준

가)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.5/10,000

나) 2017년 보통세 세입징수액 37,089,548천원 × 1.5/10,000

3. 근거법규

가.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

나.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
4. 동의안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가. 한국지방세연구원 현황

나. 출연금 및 「지방재정법」 관련 법령

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

1. 사업개요

가. 사업명: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

나. 출연액: 5,563천원(구비) ※ 2018년 출연금: 5,202천원

다. 출연기한: 매년 3. 31.

2. 출연근거

○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

3. 산출기초

가. 출연액: 5,563천원

나.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.5/10,000를 출연

※ 2017년 보통세 세입징수액 37,089,548천원 × 1.5/10,000

4. 출연대상

가. 기관명: 한국지방세연구원

1) 설립근거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1조

2) 소재지: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

3) 개원: 2011. 4. 20.

4) 기구/인력: 원장, 부원장, 2본부 7실 6센터, 정원 60명(현원 36명)

나. 이사회현황

1) 이사회 인원: 12명

2) 이사장 및 원장: 허성관(이사장), 정성훈(원장)

3) 이사회

가) 당연직(1명):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정책관

나) 광역자치단체(4명): 서울 재무국장, 부산 기획관리실장

인천 용진군 부군수, 광주 북구청 부구청장

다) 기초자치단체(4명): 대전 중구 구청장, 충북 행정국장
전남 자치행정국장, 강원 강릉시 부시장

라) 민간이사(1명):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(손희준)

※ 이사회 임기

- 이사장·원장: 3년, 당연직이사: 해당직위 재임기간
- 지방자치단체이사: 1년, 민간이사: 2년

다 주요사업

- 1)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
- 2)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
- 3)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, 구제업무 지원

5. 기대효과

가.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

나. 지방재정·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

한국지방세연구원 현황

설립근거	법 률 : 지방세기본법 151조 시행령 : 조 례 :				전화번호 : 02-2071-2798 홈페이지 : www.kilf.re.kr		
	주요연혁	- 2011.2 설립등기, 2011.4 개원,		기관형태 (출자, 출연)	- 출연		
인원현황 (2018년 5월 현원기준)	계		정규직			비정규직	
	60명 (정규직과 비정규직 합계 인원수, 파견인력 제외)		36명 (10명) * 임원 등을 포함한 정규직원수를 기재하되 파견되거나 당연직 (지자체임원 등) 공무원 수는 여기에 포함하지 말고 괄호() 로 표시) ※ 예 : 12명 (4명)			24명 (기간제, 무기계약직 등 인원수를 기재)	
임 원 (2018년 5월 현원기준)	직 책 (직책명)	성 명	주요경력 (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)			임 기 (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)	
	이 사 장	허 성 관	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			2017.12. 22. ~ 2020.12. 21.	
	부이사장	이 재 승	대전광역시 중구 구청장(권한대행)			2018. 2. 28. ~ 2019. 2. 27.	
	원 장	정 성 훈	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			2018. 1. 17. ~ 2021. 1. 16.	
	이 사	최 훈	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			당 연 직	
	이 사	하 철 승	서울특별시 재무국장			2018. 2. 28. ~ 2019. 2. 27.	
	이 사	이 병 진	부산광역시 기획관리실장			2018. 2. 28. ~ 2019. 2. 27.	
	이 사	이 두 표	충청북도 행정국장			2018. 2. 28. ~ 2019. 2. 27.	
	이 사	고 재 영	전라남도 자치행정국장			2018. 2. 28. ~ 2019. 2. 27.	
	이 사	김 철 래	강원 강릉시 부시장			2018. 2. 28. ~ 2019. 2. 27.	
	이 사	박 장 규	인천 옹진군 부군수			2018. 2. 28. ~ 2019. 2. 27.	
	이 사	강 백 룡	광주 북구청 부구청장			2018. 2. 28. ~ 2019. 2. 27.	
	이 사	손 희 준	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			2017. 2. 28. ~ 2019. 2. 27.	
	감 사	김 성 기	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			당 연 직	
	감 사	장 명 균	전라북도 순창군 부군수			2018. 2. 28. ~ 2020. 2. 27.	
주요기능	-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						
설립자본금 (단위:백만원)	1 (직전연도말 기준)				출자·출연액 (단위:백만원)	45,809 (설립이후 2017년까지 지 자체가 출자·출연한 금 액)	
최근3년간 예산 현황 (단위:백만원)	연도	2016	2017	2018	재무현황 (백만원) '17.12.31기준	자산	23,795 (자산 총액)
	예산액	8,406	9,986	13,313		부채	12,626 (부채 총액)
	지자체 지원액	8,276	9,551	12,102		자본	11,168 (자본금 총액)
경영성과 (단위:백만원) '17.12.31기준	총수익				총비용		당기순이익
	10,572				8,027		2,545

출연금 관련 법령

지방세기본법

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(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,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)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, 용도,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지방세기본법 시행령

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“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.

1. 1만분의 1.5

2. 1만분의 0.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

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.

1.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

2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,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·평가

3. 지방세의 연구·홍보

4.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

5.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

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.

지방재정법

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기부·보조, 그 밖의 공금지출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 <개정 2014.5.28.>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
2. 국고 보조 재원(財源)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
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
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“공공기관“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

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14.5.28.>

1.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

2.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

③ 삭제 <2013.7.16.>

[전문개정 2011.8.4.]

[제목개정 2014.5.28.]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5.28.>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4.5.28.>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의 결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4.5.28.>

[전문개정 2011.8.4.]

[제목개정 2014.5.28.]